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3. 16 선고 2017가단11113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 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18. 3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,046,6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진철

별지